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165호(號) 1934(昭和 9)년 3월 31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55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5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3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할인임률적용(割引賃率適用) 부문(部門) 중(中) 제6호(號) 및 제7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6 본표(本表) 중(中) 발역(發驛)을 한정(限定)한 것은 특별(特別)히 정(定)한 경우를 제(除)하고 당해(當該) 역발(驛發) 화물(貨物)에 대(對)해서만 본표(本表)의 임률(賃率)을 적용(適用)함.

7 본표(本表) 중(中) 착역(著驛)을 한정(限定)한 것은 당해(當該) 역착(驛著) 화물(貨物)에 대(對)해서만 본표(本表)의 임률(賃率)을 적용(適用)함.

단(但) 연락역착(連絡驛著) 임률(賃率)은 연락(連絡)하는 것에도 이것을 적용(適用)함.

8 우메다(梅田), 미나토가와(湊川), 하카타(博多) 발(發) 할인임률(割引賃率)은 사와야마항로 [澤山航路]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, 하카타(博多) 항발(港發)에 각각 적용(適用)함.

동(同) 조선내발착(朝鮮內發著)의 부문[部] 석탄(石炭)의 항(項) 조선무연탄(朝鮮無煙炭)의 행(行) 발역란(發驛欄) 중(中) 「김천(金泉)」을 「김천(金泉: 연대선[連帶線]을 포함[包含]함)」으로, 만주탄(滿洲炭)의 행(行) 발역란(發驛欄) 중(中) 「단동(安東)」을 「단동(安東: 연락선[連絡線]을 포함[包含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동(同) 콩깻묵[豆粕]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중(中) 「단동(安東)」을 「단동(安東: 연락선[連絡線]을 포함[包含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